

2024년 환경성 석면노출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

1. 검진대상

- 과거 석면공장 가동기간(1982~1995) 중 반경 2km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타업종 종사자
- 슬레이트 지붕 가옥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중 만 40세 이상
- 과거 석면 취급 업종 종사자
 - ※ 건축·건설업, 건물해체·철거업, 선박건조·수리업, 보일러·배관업, 자동차정비업 등

2. 검진항목

- 기본(1차)검진 - 의사진찰, 흉부 X-ray(석면질환 판독), 석면노출력 조사
- 정밀(2차)검진 - 의사진찰, 흉부 CT(석면질환 판독), 폐기능검사
 - ※ 기본검진 결과 의심 소견이 있으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진 실시(무료)

3. 검진일시 및 장소

검진일자	검진장소	검진시간
7월 7일(일)	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	오전 9시~오후 4시 (점심시간: 낮 12시~오후 1시)

※ 현재까지 선두구동 주민 13명이 '환경성 석면 피해자'로 인정되었습니다.

4. 안내사항

- 코로나-19 와 독감 등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정밀검진 결과 석면질환 소견이면 '환경성 석면피해인정' 또는 '산재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시고 식사 후 검진 가능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(055-360-3770~2)로 연락주세요.



붙임

2024년도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별 지급금액

피해인정질병		요양생활수당	장의비 및 특별장의비	특별유족조위금
원발성 악성종피종		1,749,23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/1000)	3,303,30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/1000)	49,549,500원 (장의비의 1,500/100)
원발성 폐암		1,749,23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/1000)		49,549,500원 (장의비의 1,500/100)
미만성 흉막비후		1,259,45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/1000)		24,774,750원 (장의비의 750/100)
석면 폐증	1급			
	2급	839,63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/1000)		16,516,500원 (장의비의 500/100)
	3급	419,810원 (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/1000)		8,258,250원 (장의비의 250/100)

※ 석면피해구제제도: 석면공장 또는 석면광산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
(근거법령: 석면피해구제법, 심의기관: 한국환경산업기술원)

※ 구제급여 종류

- 요양급여: 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(진료비, 약제비 등) 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
- 요양생활수당(매월 지급): 석면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
- *) 석면폐증 2·3급은 24개월만 지급. 타 질병은 60개월 지급 후 유효기간 갱신 필요
- 장의비(일시금): 석면피해 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-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(일시금): 석면피해 인정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

※ 악성종피종, 폐암, 석면폐증(폐섬유화증 일종)으로 사망 후 15년 이내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

※ 지급액 적용기간 : 2024.1.1. ~ 2024.12.31.

※ 석면 건강검진(부산광역시 지원으로 무료,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소견이면 정밀검진 시행)
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검진 · 의사진찰 · 흉부 X-ray 검사(석면질환 판독) · 석면노출력 조사(주거력, 직업력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밀검진 · 의사진찰 · 흉부 CT 검사(석면검사 Protocol, 석면질환 판독) · 폐기능검사(일산화탄소화산능, 기도가역성 포함)
---	--